



중앙선거방송토론회, 6·4 지방선거 관련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 KBS · MBC · SBS 동시 생중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1390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장 이정희)는 3월 27일(목) 오전 10시부터 KBS 스튜디오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토론회는 홍기섭 현 KBS 보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복지·교육 분야」에 대하여 토론한다.

「복지분야」에서는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①「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②「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교육분야」에서는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하에 ①「역사교과서 문제」, ②「사교육비 문제」 토론하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KBS·MBC와 SBS를 통해 동시 생중계되며, 생중계를 시청 하지 못한 일반국민은 언제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위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과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국민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 중 다수를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6·4 지방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는 3차례의 토론회 진행방식을 달리하여(제1차 : 토론팀간 집중토론, 제2차 : 전문가 패널, 제3차 : 국민질문)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흥미롭고 역동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각각의 소주제별 토론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각 토론팀에게 총량(10분)의 시간을 배정·운영하는 “시간총량제” 자유 토론 방식과 사회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는 이번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복지·교육분야」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와 입장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안내자료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붙임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4. 3. 27.(목) 10:00 ~ 12:00

○ 개최장소 : KBS 스튜디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2. 중계방송 : KBS·MBC·SBS 텔레비전 동시 생중계

3. 토론자

정당명	직위	성명	비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	제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제19대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김미희	제19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후	제19대 국회의원

4. 사회자 : 홍기섭(KBS 보도위원)

5. 토론주제

대주제	소주제
1. 복지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2. 의료체계 개선방안
2. 교육현장, 이대로 좋은가?	1. 역사교과서 문제 2. 사교육비 문제

6. 진행방식 : 사회자 공통질문 후 답변 → 토론자 자유토론(시간총량제) → 맺음말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페이지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페이지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페이지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페이지"는 "중앙선거방송토론페이지"로 본다. <개정 2005.8.4>
-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